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감정평가서번호	B12607-F-0701
건 명	황진아 소유물건 (2026타경3633)
의 뢰 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박진영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사)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Pacific Appraisal Co., Ltd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1-10 602호(장항동,파크프라자)

대표전화 : (031)932-0072 FAX : (031)932-0073

감정평가서 번호 : 태평양 제B12607-F-0701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이 석 진) (인)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지 사 장 박 희 배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사억오백만원정 (₩405,000,000.-)			
의 뢰 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박진영	감정평가목적	경매	
제 출 처	경매2계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황진아 소유 (2026타경3633)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타 참고사항	-	2026. 7. 8.	2026. 7. 8.	2026. 7. 8.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정평가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세대	구분건물	1세대	-	405,000,000
			이 하 여 백			
						₩405,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감 정 평 가 사 申珉羽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운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구분건물)에 대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계법규와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3.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3.2.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4.1.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2. 대상물건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대상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상물건은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5. 기준시점 결정 및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6년 7월 8일입니다.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는 2026년 7월 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실지조사내용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임대내역’ 및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사항

- 본건의 위치는 '건축물현황도' 및 현관에 명인된 호수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공부와의 물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및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구분등기 되어 있고, 실제 구조가 독립되어 있는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구분소유 물건입니다.

- 구분소유 부동산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체로 거래(분양)됩니다. 따라서, 토지·건물의 개별평가는 곤란하나,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명세표'에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배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공동주택 토지·건물 배분비율 작성 연구」 상 배분비율표 - 토지: 50%, 건물: 50%)

- 본건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내부 확인이 불가한 바 내부 구조 및 이용 상황 등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 시 이해관계인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대상물건 개요

1. 건물 개요

▌총괄 개요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26	건 물 명	한빛마을7단지 한신휴플러스
주 용 도	공동주택	동 수	22동
연 면 적 (㎡)	220,164.35	세 대 수 호 수	1,375개호

▌706동 개요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층 수	지하 1층/지상 22층
주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세 대 수 호 수	88개호
연 면 적 (㎡)	10,019.2	사용승인일	2011.11.09

2. 대상물건 호별 개요

일련번호	동·층·호	용 도	위 치	전유면적 (㎡)	공용면적[1] (㎡)	전유+공용 (㎡)	전 용 률 (%)	대지권면적 (㎡)
가	제706동 제19층 제1903호	아파트	-	84.93	31.0575	115.9875	73.22	56.1454

1)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주'에 해당하는 면적만 포함하였습니다.

III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1. 거래사례

[단가: 원 미만 반올림]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용 도 위 치	전유면적 (㎡)	거래일자 사용승인일	거래금액 (원)	단가 (원/전유㎡)
ㄱ	야당동 1026	한빛마을7단지 제706동 제20층 제2002호	아파트 -	84.93	2026.02.07 2011.11.09	409,000,000	4,815,731
ㄴ	야당동 1026	한빛마을7단지 제712동 제13층 제1303호	아파트 -	84.93	2026.03.18 2011.11.09	399,000,000	4,697,987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감정평가사례

[단가: 원 미만 반올림]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용 도 위 치	전유면적 (㎡)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액 (원)	단가 (원/전유㎡)
a	야당동 1026	한빛마을7단지 제706동 제6층 제602호	아파트 -	84.93	2025.09.15 2011.11.09	경매	406,000,000	4,780,407
b	야당동 1026	한빛마을7단지 제717동 제10층 제1004호	아파트 -	84.91	2026.04.27 2011.11.09	경매	405,000,000	4,769,756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3. 인근지역 가격수준

주위환경	용도	층	위치	가격수준(원/전유㎡)	비 고
아파트지대	아파트	19	-	4,700,000 ~ 4,800,000	본건 유사

Ⅳ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비준가액	=	거래사례가격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가치형성요인비교

1. 거래사례 선정

1.1. 거래사례 선정 기준

①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②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③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1.2. 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사례 중에서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련번호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용도 위치	전유면적(㎡)	거래일자 사용승인일	거래금액(원)	단가(원/전유㎡)
가	ㄱ	야당동 1026	한빛마을7단지 제706동 제20층 제2002호	아파트 -	84.93	2026.02.07 2011.11.09	409,000,000	4,815,731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 정 의 견	사정보정치
거래사례의 거래가격은 인근지역 가격수준을 참작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000

3.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적정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지역 및 용도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시점의 지수는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3.1. 한국부동산원 통계지수

일련번호	지 역	유 형	적용 통계지수
가	경기 경의권 파주시	아파트	지역 : 경기 경의권 파주시 2026.02.07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6년01월) : 100.0 2026.07.08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6년05월) : 98.9

3.2. 시점수정치 산정

[시점수정치: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번호	기호	기 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가	ㄱ	2026.02.07 ~ 2026.07.08	98.9 ÷ 100.0≒0.98900	0.98900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PRES부동산융개주)

4.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말합니다. "가치형성요인 비교"란 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의 종별·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구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4.1.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주거용]

요인구분	비 교 항 목	세 항 목
(단지) 외부요인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의성	인근 편익시설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교통 및 도보의 편의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획지·단지의 여건(경사지, 고저), 차량 이용의 편의성(가로의 폭, 구조, 계통, 접면)
	교육환경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등)과의 거리, 등하교의 편리성, 인근 교육시설의 종류, 학군 선호도
	자연환경	자연환경(조망, 경관, 풍치 등), 공원 및 녹지 등과의 접근성
	거주환경	거주환경 조성상태, 거주환경 저해시설(오염시설, 공해 및 소음유발시설, 위험 및 혐오시설 등)의 유무 및 거리
(단지) 내부요인	시공사의 브랜드	
	건물의 규모	총 세대수, 건물의 최고 층수
	단지의 구성 및 환경	동의 배치상태, 동간 거리, 면적별 구성비, 공간적 쾌적성(용적률, 건폐율 등), 조경 및 녹지 등 조성상태
	건물의 구조 및 설비	건물의 구조 및 재질, 현관구조(계단식, 복도식), 외부구조(판상형, 타워형, 혼합형 등), 내진설계, 필로티 유무, 난방방식(지역난방, 개별난방 등), 각종 설비(승강기 등)의 유무 및 상태
	건물의 노후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 리모델링 또는 대수선 여부
	주차시설 및 공용시설의 상태	세대당 주차대수, 지하 주차장의 유무 및 세대 연결성, 차량 진출입의 용이성, 기계식 주차장의 유무 및 비율,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경로당, 유치원)의 유무 및 상태
	보안 및 유지관리	보안 및 유지관리 체계 및 관리상태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일조, 채광, 조망 등의 정도, 통풍의 정도, 엘리베이터, 계단으로의 접근성, 소음의 영향 정도, 사생활 침해의 정도, 공용시설·교육시설·교통시설 등과의 접근성, 편익시설의 접근성
	전유면적 및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의 면적 크기,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설계 및 구조	평면방식(타입 등), 방 및 화장실의 개수, 복층 유무, 1층 전용정원 여부, 다락·테라스·베란다 등의 유무, 반지하의 상태(전면 완전 노출형 등)
기타요인	개발사업 가능성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편입 여부
	행정적 규제,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2.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번호	기호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가	ㄱ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거래사례와 가치형성요인이 대체로 유사합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5.1. 적용단가

[적용단가: 원 미만 반올림]

일련번호	층·호	거래사례단가(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적용단가(원/㎡)
가	제19층 제1903호	4,815,731	1.000	0.98900	1.000	4,762,758

5.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비준가액: 유효숫자 셋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일련번호	층·호	적용단가(원/㎡)	전유면적(㎡)	비준가액(원)
가	제19층 제1903호	4,762,758	84.93	405,000,000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및 경매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감정평가액(원)
부동산	405,000,000
합 계	405,000,000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구조	면적(㎡)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1 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61 (야당동) 동소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9층 제1903호 1 소유권대지권	1026 한빛마을 7단지 제706동 1026 84.93 56.1454 79,610 x---- 79,610	공동주택 (아파트) 대 84.9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2층 지1층 1층 2층 ~ 22층 각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152.94 467.92 447.54 79,610 84.93 56.1454 배분가격 202,500,000 202,5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소재 '운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일대는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각급 학교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거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2층 건물 내 19층 1903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도배, 타일붙임 마감
창호: 알루미늄샷시 시스템창호 마감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드레스룸, 발코니, 현관 등)로 이용 중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급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 등

북측으로 폭 약 40m, 동측으로 폭 약 15m의 포장도로에 2면이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파주운정지구)(접합), 중로2류(폭 15m~20m)(파주운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15-02-2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바람(TEL.940-7244))<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와석초등학교,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운정초등학교,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15-02-2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0.3.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운정초등학교,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광 역 위 치 도

소재지	1026	7	706	19	1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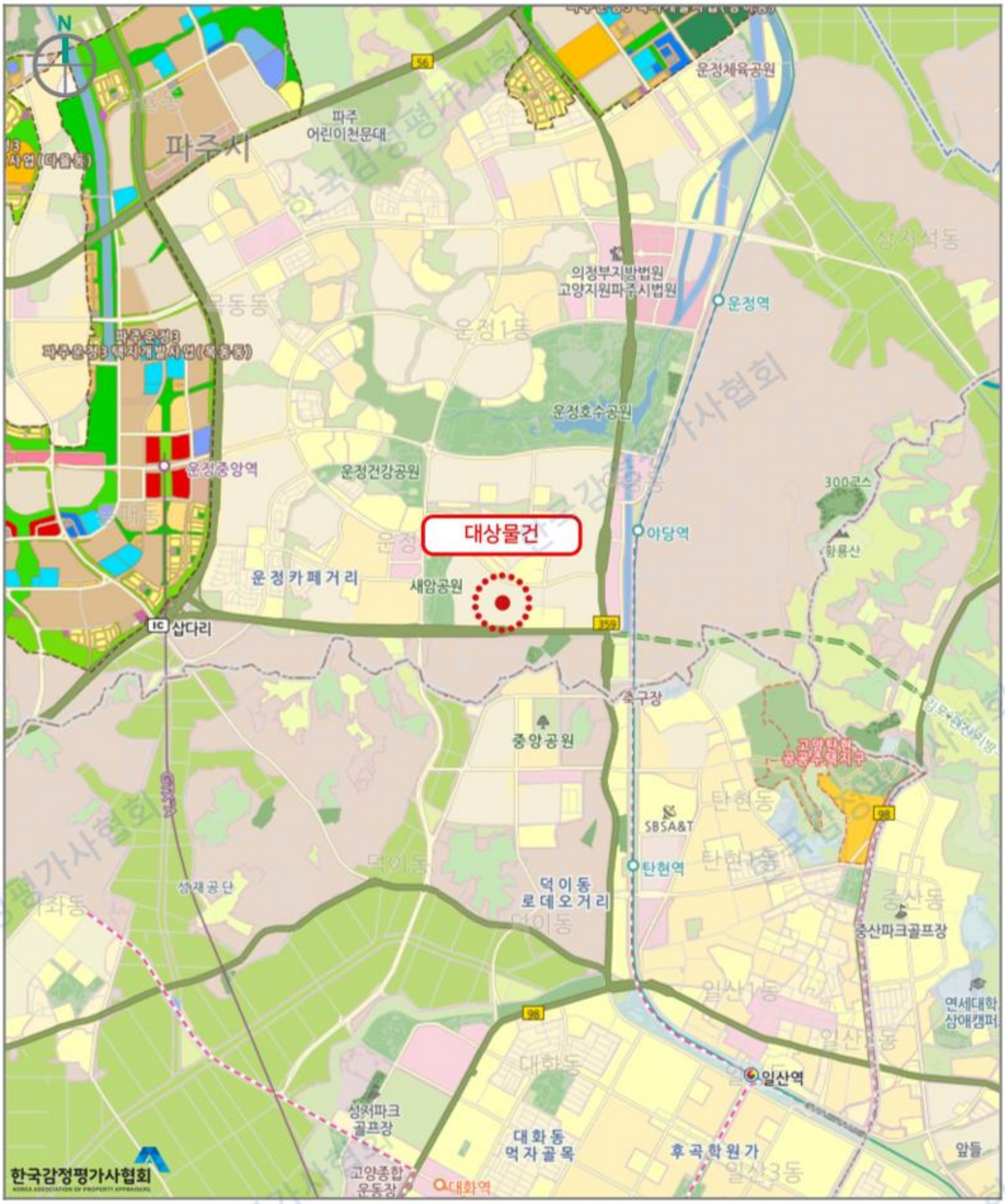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PRES부동산연구(주)

상 세 위 치 도

소재지	1026 7 706 19 1903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PRES부동산중개(주)

호 별 배 치 도 및 임 대 내 역

N

S

NON SCALE

[제19층 호별배치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호 별 배 치 도 및 임 대 내 역

N

S

NON SCALE

[제1903호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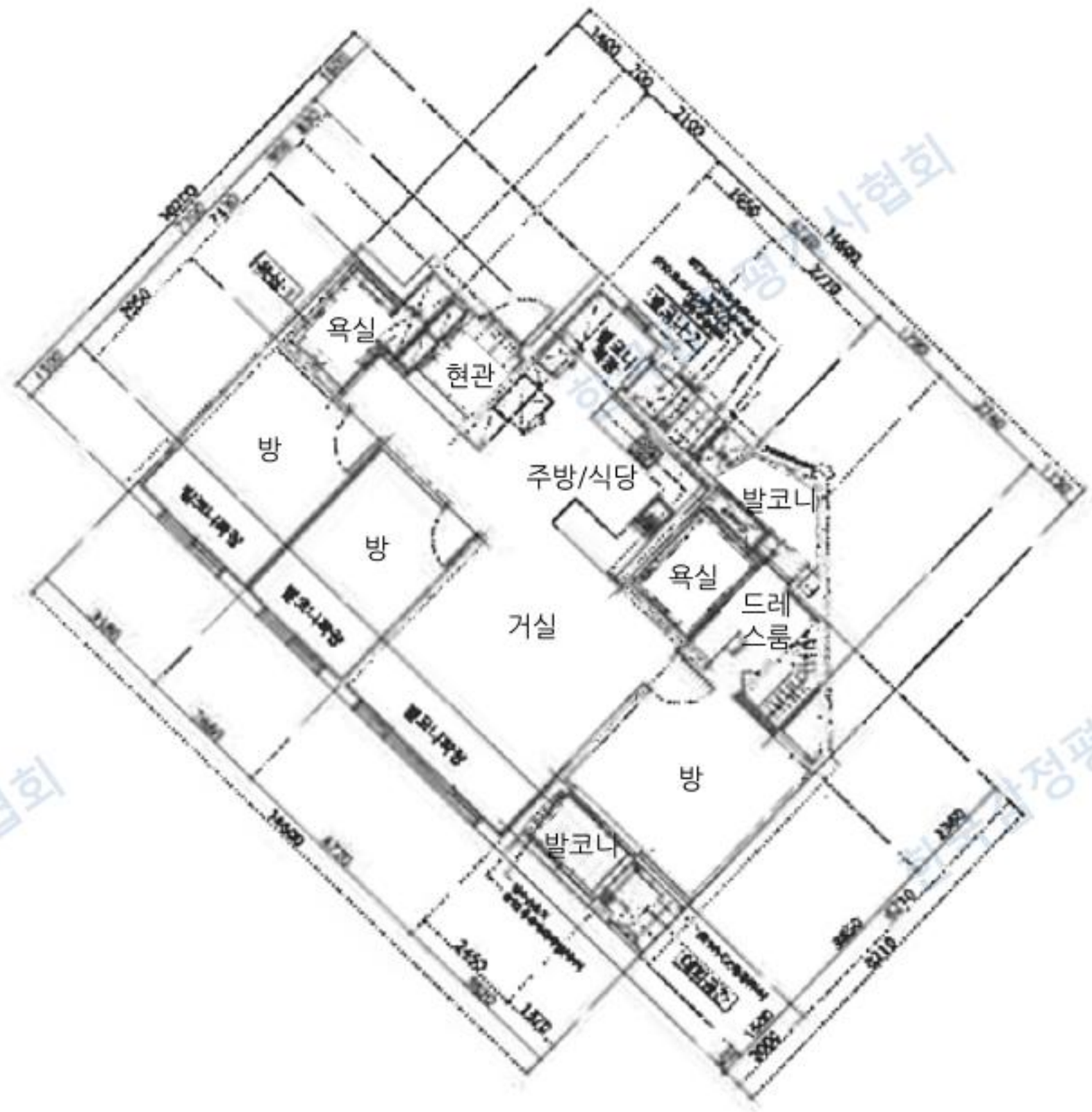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 북측에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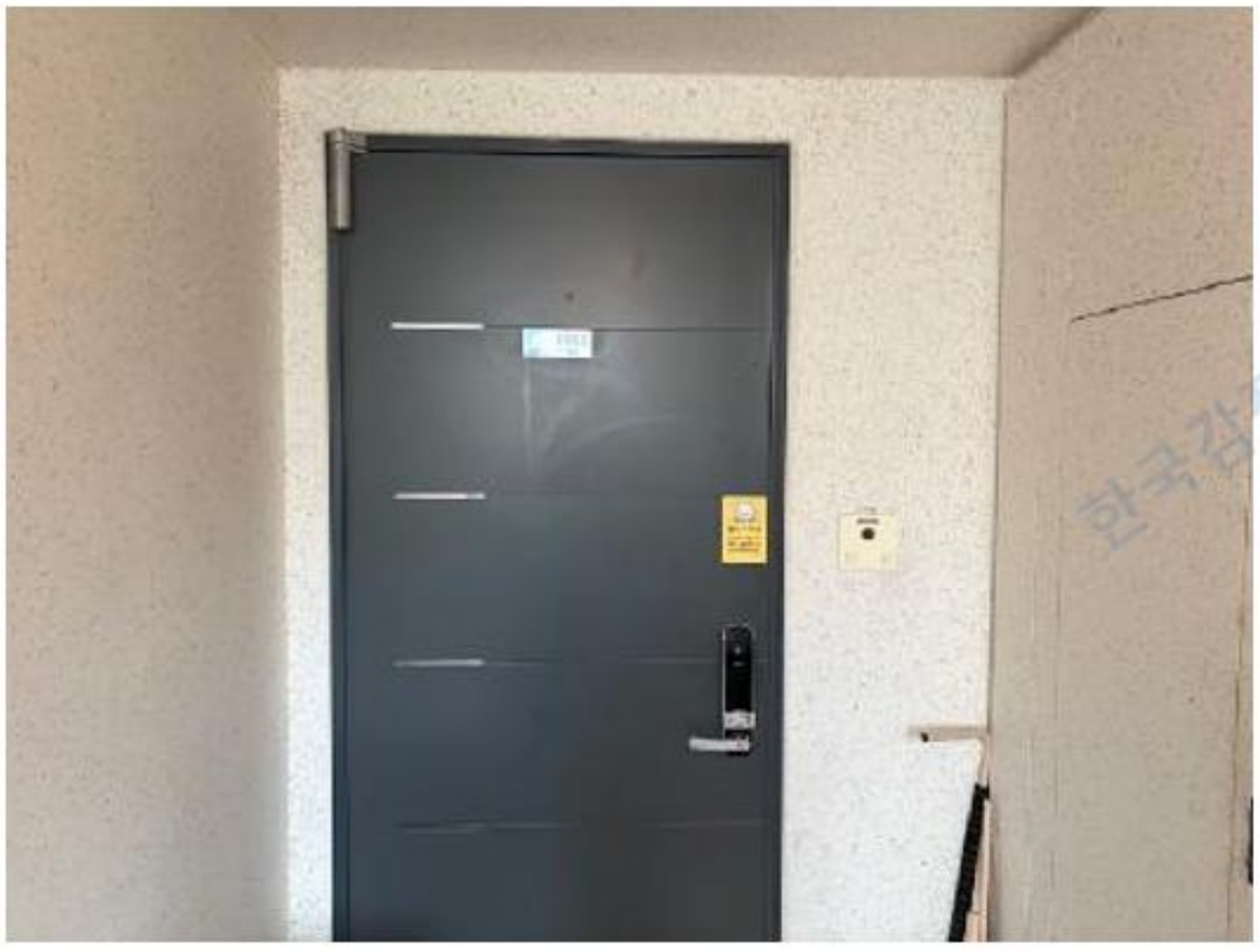

【현관 전경】

사 진 용 지



【주위 전경 - 북서측에서 촬영】



【주위 전경 - 단지 외부에서 촬영】